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《 건축물 설계 시, 소음 저감·차단 구조 고려 》
■ 박용갑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618호)

2025. 2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박용갑의원 대표발의(제2205618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건축물 설계 시,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·차단하도록 설계 (안 제23조제2항)	2

I. 박용갑의원 대표발의(제2205618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용갑의원 등 16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11. 15.

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8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가구·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.

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,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·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).

3. 검토의견

가. 건축물 설계 시,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·차단하도록 설계
(안 제23조제2항)

현행	개정안
제23조(건축물의 설계) ① (생략)	제23조(건축물의 설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·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<u>없도록</u> 설계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건축물의 공법(工法)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없고 소음을 효과적으로</u> <u>저감·차단하도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개정안은 건축물 설계자¹⁾가 건축물 설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‘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·차단하도록 설계’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.

1) 「건축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3. “설계자”란 자기의 책임(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,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.

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(아래 표 참조),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²⁾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【 층간소음 관련 민원 현황 】

(단위: 건)

구 분	접수	처리
2020년	43,684	30,990
2021년	49,996	34,306
2022년	52,034	34,547
2023년	70,119	41,506
2024년	39,333	23,055

※ 자료: 국토교통부(2024. 7. 31. 기준)

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자에게 건축물 설계 시 소음을 저감·차단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, 층간소음 등 각종 소음에 따른 거주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사전적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미 「건축법」 제49조제4항³⁾에서 소 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 안의 실익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

2) [더 보다] 소음 살인, 22명의 죽음(KBS뉴스, 2024. 7. 7.)

3) 「건축법」

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·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
건축물 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「건축법」 제23조제2항에서 소음 방지만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, 타 기준(이용자 편의·친환경 등)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따라서, 건축물의 소음을 저감·차단하는 설계를 구현하는 개정안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585